

인센티브제 등 새로운 시책을 통한 체납액 정리

이 해 성

경기도 세정담당

I. 머리글

우리 도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모든 납세자에 대한 공평과세실현과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세 특별징수대책 지침을 수립 시달하고, 세수증대활동비로 4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도세체납액 징수를 위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인센티브제 실시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체납세 납부제 실시 및 상·하반기 체납액징수 평가실시 후 우수시군에 3억원의 상사업비보조 등 총 10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고액체납법인에 대한 입장료 현금징수, 카드대금압류를 통한 체납징수, 채권확보부동산 공매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수시책과 소송승소로 인한 체납액 징수 등으로 2000. 9월말 현재 이월체납액 6,815억원의 16.9%인 1,048억원을 정리하였다

또한 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예금·급여 전화압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압류, 형사고발, 관허사업제한 신용거래불량등록 등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과주시 등 6개시군의 경우에는 평균 정리율이 27%로서 도 전체 평균 체납세 정리율 16.9%보다 11.1%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액 정리율이 전년도 동기 정리비율보다 3.5% 감소하고 있어 연도 폐쇄 기까지 단계별 체납액 정리계획에 의거 강력한 체납액 최소화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도의 그동안 체납액 정리를 위한 처리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지방세 체납현황

1. 체납규모

우리도의 금년도 9월말 현재 체납액 규모는 5,137억원으로 도세1,935억원(38%), 시군세 3,202억원(62%)임

- 연도별로는 '96년말 2,343억원에서 '97년 687억원증, '98년 917억원증, '99년 1,703억원증, 2000년도 현재 513억원 감소로 총 2,795 억원이 증가되어 IMF시기의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되었다고 하겠음
- 시군별로는 고양시 507억원(9.8%), 성남시 465억원(9.0%), 안산시 459억원(8.9%), 부천시 395억원(7.7%), 용인시가 368억원(7.1%)임
- 세목별로는 취득세 1,512억원(29.4%), 주민세 1,289억원(25.0%), 자동차세 1,125억원(21.8%), 종토세 467억원(9.0%), 재산세 288억원(5.6%)순임
- 체납원인별로는 부도폐업 1,580억원(30.7%), 납세기피 1,309억원(25.4%), 무재산 1,063억원(20.6%)이며
- 체납건수는 총 2,999천건으로 주민세 762천건(25.4%), 자동차세 722천건(24.1%), 면허세 556천건(18.2%), 종토세 399천건(13.3%), 재산세 289천건(9.7%)로 나타났음

2. 체납실태

전국 체납액 2조8,393억원중 서울시가 1조993억원으로 38%, 우리도가 5,137억원으로 17.7%, 부산시가 2,087억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세수 규모인 22조1,912억원의 31%인 6조9천억원이 서울시, 20%인 4조6천억원이 우리도, 7.6%인 1조7천억원이 부산시로 나타나 지방세수 규모와 체납세율이 유사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

그 동안 IMF 경제위기 여파로 '99까지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지방 자주재원확보

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전개결과 체납액 누증율이 다소 감소되고 있으나 아직도 금년도 전체 세수규모의 13% 수준이다.

주요체납요인으로는 부도·폐업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한 취득세분 체납액과 국세 부가분 주민세할이 관할 세무서에서 자료가 지연 통보됨에 따라 그사이 주소변경, 담세능력상실 등의 사유로 부과·징수 시기를 일실하여 체납액이 발생되며 빈번한 자동차 이전·폐차·도난 등의 사실상 무소유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98 구조조정 등에 따른 세무부서 조직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도내 약 3백만건의 체납세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징수·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3. 주요 세목별 체납사유

1) 취 득 세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비과세감면 추정분 소송제기중
- 취득신고만 이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후 취득세는 체납
- 취득물건에 명의만 빌려주어 취득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세기피 등

2) 주 민 세

-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나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가 지연 통보되어, 그동안 주소변경·부도 등에 따라 체납 발생
- 균등할의 경우 세대 기준으로 부과하여 거소를 달리하는 주민등록자나 소액으로 인한 납세의식 부족으로 체납됨
-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과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확정되기전까지 주민세 납세기피

3) 자동차세

- 사실상 도산 · 폐업된 법인소유 자동차가 종업원이나 제3자에게 불법이전 · 운행 중으로 매년 체납액 증가
- 개인간의 거래는 이루어졌지만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권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원소유자에게 계속 부과됨에 따라 체납됨
- 사실상 도난 · 폐차 · 멸실된 자동차에 매년 부과됨

4) 종합토지세

- 토지보유시점인 매년도 과세기준일(6. 1)과 납기개시일(10.16) 사이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경우 납세의무 분쟁으로 체납 발생
-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으나 납부능력이 없는 납세자 상존

5) 재산세

- 토지보유시점인 매년도 과세기준일(5. 1)과 납기개시일(6.16) 사이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경우 납세의무 분쟁으로 체납 발생
-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미분양으로 인한 건축주 납세능력 부족

Ⅲ. 滯納額 定理을 위한 主要 推進事項

1. 인센티브 부여

체납액징수 등 세수증대를 위한 도비 지원

- 세수증대활동비 지원 31개 시군 : 460만원
- 도세체납액 징수 인센티브 부여 31개 시군 : 300만원
- 체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지급 20개 기관 : 300만원

2. 체납자대상 징수활동별 추진실적

1) 체납처분

- 부 동 산 ⇒ 압류횟수와 관계없이 체납즉시 독촉고지후 압류
- 봉급 및 채권 ⇒ 직장 및 금융기관에 압류 촉탁의뢰
- 자 동 차 ⇒ 독촉없이 등록부서에 촉탁의뢰 및 번호판 강제영치
- 공 매 ⇒ 고액체납자를 선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 부동산 압류 :	204,558건	5,887억원
○ 봉급 및 채권압류 :	95,560건	1,454억원
○ 자동차압류 :	764,150건	2,154억원
○ 번호판영치 :	63,089건	174억원
○ 공 매 :	1,803건	295억원

2) 행정제재

- 관허사업제한 ⇒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모든 인허가를 제한
- 형사고발 ⇒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자중 상습체납자 선정고발
- 신용불량등록 ⇒ 자영업자 및 법인 등을 우선으로 제재

○ 관허사업제한 :	54,820건	718억원
○ 형사고발 :	43,280건	201억원
○ 신용불량자등록 :	35,038건	3,896억원

3) 결손처분

- 무 재 산 ⇒ 전국재산조회(부동산) 및 금융재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무재산자로 입증되거나 행방을 알 수 없어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3,670건, 460억원)

4) 고질체납차량정리

- 정리대상 ⇒ 사실상양도, 폐차, 말소 등으로 미소유사실이 입증된 차량으로서 입증일 이후부터 부과취소(16,505대 43억원)

3. 체납액 징수 역점추진방향

-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 전개
- 징수가능분과 불가능분을 일제조사
 - ┌ 징수가능분 → 전직원 동원 체납액 징수독려
 - └ 징수불가능분 → 결손처분, 보유재산공매, 형사고발
- 체납액 과다 세목별 특별조치방안 모색강구
- 제도적 개선책 수립시행
- 체납액 정리를 위한 중앙건의 사항 조치

4.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

1) 추진개요

- 특별정리기간 : 2000.11. 1 ~ 2001.3.31
- 추진방법 : 단계별, 조치계획별 세부운영계획수립 시행
- 추진체계
 - 도 : 특별정리계획 수립시달 및 지도점검
 - 시군 : 자체 실정에 따른 계획수립시행
- 특별징수대책반 구성운영
 - 총 괄 : 부시장·부군수
 - 담 당 : 세무부서 담당과장
 - 운영사항

- 체납자 조사결과 정리 및 징수계획 수립
- 1, 2단계 조치사항 일정별 추진계획대 실적관리
- 개인별 체납액 부여 및 징수독려

2) 체납대상 일제조사 실시

전체 체납건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징수가능분과 불가능분 구분하여 징수가능분에 대하여는 관허사업등을 지속실시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불가능분은 채권 및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확행

- 징수가능분
 - 주민등록 또는 거소 확인 가능자
 - 부동산 또는 금융재산 소유자
 - 직업보유자(급여수령 또는 사업체 유지)
 - 신용카드 소유 및 사용자
- 징수불가능자
 - 부도 · 폐업법인이나 사업자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소확인 불가능자
 - 부동산 및 금융등 재산 미보유자
 - 정기적 소득이 없는자
 - 체납기간 5년이상자

5. 체납대상별 조치계획

제1단계 : 징수가능 대상자

- ⇒ 주민등록 또는 거소확인 가능자
- ⇒ 부동산 및 금융재산(예금, 전화가입권 등)소유자
- ⇒ 신용카드 소유 및 사용자, 직업보유자

- 상습·고액채납자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 지속 실시
 - 인·허가 부서와 채납액 징수를 위한 사전 경유제 실시
-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및 자산관리공사 공매처분 확행
 - 행자부 전산망 및 도 지적정보센터 이용
- 채납자의 급여, 예금, 적금등 채권 활성화 및 추심
 - 채권확보 및 기 압류된 채권은 전액 추심
-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적극 등록
 - 채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1천만원이상 고액 채납자
 - 연간 3회이상 채납하고 1천만원이상 상습채납자
- 상습채납자 사법기관 형사고발
 - 1회계연도내 3회이상 상습 채납자
- 신용카드 소유 확인 채납액 납부 독려
 - 신용카드사에 채납자별 카드발급 여부 조회
 - 카드소지시 카드 대출식 채납액 납부 독려
 - 불응시 신용불량자로 등록, 이용제한 조치

제2단계 : 징수불가능 대상자

- ⇒ 행불자(주민등록 말소자로 거소불명자)이며 무재산자
- ⇒ 유재산자로 재산공매처분을 하여도 실익이 없는자
- ⇒ 부도·폐업된 법인대표자의 재산조회결과 무재산자

-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소유 파악
 - 재산발견시 즉시 압류, 공매처분
- 금융기관을 통한 채권조회
 - 전국 재산조회는 행자부에서 연4회로 한정 운영하고 있어 관내 금융점포로 수시 조회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추심절차 이행
-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한 거주지 파악

- 주민등록 전산망이나, 통·반장문의를 통해 소재지 파악후 추적독려
- 행불자, 무재산자, 소멸시효 완성자등에 대한 결손처분 적극 이행
-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과감히 결손처분 확행하되 처분이후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체납처분 재 실시

제3단계 : 징수가능분 대상 전직원 특별징수제 시행

- 관내분
 - 시·군, 읍·면·동 직원 징수할당제 부여
 - 소속 부서장 일일 복명제 실시
 - 주간단위 부서장·부군수 징수보고회 개최
 - 징수실적별 포상금 지급(부서단위)
- 관외분
 - 세무부서 소속직원 대상 징수할당제 부여
 - 거주지 행정기관 협조 관허사업 제한등 조치

제4단계 :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 추진절차
 - 대상자선정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한자 중에서 내부기준에 의하여 선정
 - 고 발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되 송달증명 등 입증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고 발 취하 등을 사전에 방지
 - 사후조치
고발로 인하여 체납세를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체납처분 중지

< '99 ~ 2000 고발 및 처리 현황 >

(단위 : 백만원)

고 발 자			고발중 납부			처리결과						잔여액
명	건수	세액	명	건수	세액	벌금		무혐의	기소 중지	체형	미통보	
						명	금액					
3,520	53,029	23,107	1,045	10,600	2,992	73	171	42	803	40	1,702	20,115

IV. 체납액 과다 세목별 특별 조치

1. 자동차세

1) 현황 및 문제점

- 폐차 · 도난차량 등은 멸실 확인서에 의거 비과세 하나 사실상 미소유 자동차는 미소유 사실확인서(읍면동장 발행)발급이 지연하여 체납의 요인이 되고 있음
 - 관외거주자 사실확인을 관외 읍면동장이 발급거부
 - 부도, 해산법인 소유차량 무단이전사용
 - 양수인의 등록이전 미이행
 - 채권자가 임의 인도해간 차량
 - 오랜기간 멸실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미조치

2) 처리방안

- 사실상 폐차 · 멸실 · 파손 · 소멸된 자동차는 다음요건 구비시 비과세 처리
 - 본인의 사실확인 및 서약서 징구
 - 본인확인 불가시 이해관계인 또는 세무담당공무원의 사실 확인서 단, 정기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 사실확인
 - 조사결과 납세의무자의 행방 불명이나 별도 재산 미소유시 결론처분

2. 취 득 세

1) 현황 및 문제점

- 부도폐업으로 법인이 부존재하거나 무재산이라도 공매완료 · 행불 · 회사정리법에 의거 납부의무 면제시에만 결손처분 가능
-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선납후 등기 가능하나 취득세는 취득후 30일 이내 신고납부제로 되어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후 납세기피
- 저소득 또는 청소년층의 무분별한 보증 · 할부차량 구입으로 체납만연
- 본인의사와 무관한 상속 재산 취득시 납세기피 또는 상속자간 재산분할 분쟁등으로 체납

2) 처리방안

- 자산관리공사와 공매 및 배분에 관한 협정체결 후 일제 공매처분
- 취 · 등록세 동시 납부제도 중앙건의 조치
- 상속재산 체납액은 징수 가능 상속자 재산 압류 조치후 독려

3. 주 민 세

1) 현황 및 문제점

- 거소불명자 확인을 위한 행정력 부족으로 징수율 저조
- 국세 부가분은 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가 지연되어 채권확보가 어렵고 이중납세의식으로 납부기피
- 국세 결손처분시 지방세 부가분의 결손처분이 불가하여 사실상 체납액으로 존치
- 부도 폐업된 사업자 부가분도 계속 체납액으로 누증관리됨

2) 처리방안

- 재산조회 및 거주사실 확인후 결손처분

※ 단 10만원미만 소액체납액은 재산조회 없이 행불확인시 결손

V. 체납액 정리를 위한 제도적 조치방안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업무 협정체결

'97. 8. 7 공매업무 협약체결로 매각업무만 대행하고 배분은 당해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배분 등의 집행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2. 체납세 징수 도우미제 운영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등으로 체납세 관리 및 독려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의 여건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직공무원 및 대민 접촉이 많은 전직공무원, 보험설계사 등을 징수 도우미로 위촉하여 체납세 징수독려에 활용

3. 경찰과 체납차량 합동단속반 운영

운행중인 체납차량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주로 야간에 정지되어 있는 체납차량만을 단속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매우 미약하므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함

4. 체납세 정리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체납자중 채권은 확보하고 있으나 압류 후순위 등으로 공매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음에도 형식상 재산을 소유한 상태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선순위 압류·저당

설정등)이 다소 상존하고 있으므로 결손여부를 심의할 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함

5. 체납세 징수 포상금제 실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98. 7. 3 경기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본제도 운영이 불합리하므로 개선토록 권고된 사항이나 누증되고 있는 체납세 징수율제고를 위하여 포상금제 제도입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VI. 징수실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

1. 지방세 결손처분 적극실시

1) 근 거 : 지방세법 제30조의3, 지방세법 제82조

2) 추진사항

- 무재산 행불자인 경우
 - 전국재산 조회를 통한 부동산 소유여부 관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채권 보유여부 확인
 - 세무서 신고용 주식 이동 상황 명세서 등(제2차 납세의무여부)확인
 - 사업양수로 인한 2차 납세여부(경락및보험법에의한 양수제외)
 - 행불여부 확인
- ※ 행불 판단 :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되 있으나 실제 현존하지 않는 유령 법인과 개인은 사실 조사후 행불 여부 판단
- 체납처분 종결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될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경우
 - 체납세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압류재산을 일제 조사하여 압류한 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처분비에도 못 미칠 경우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 적극추진

※ 근거: 국세징수법 제85조, 동법 제86조, 국세통칙 3-12-1-85참조

※ 본 사항을 양도양수로 인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적극 활동

○ 소멸시효 완성분의 경우

-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므로 지방세법 제 30조의6(시효의 중단 및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한 '95 이전분은 전액 결손처분

※ 지방세법 제30조의5

VII. 무배당 등 실익이 없는 체납자 처리지침

경매가 개시되어 체납세를 징수하고자 체납세교부 청구시 채권 압류가 후순위어서 배당이없거나 부족하고 환가가 가능한 재산은 이미 매각이 완료되어 사실상 체납 세 징수가 불가능함에도 체납처분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자함

1. 현실태 및 문제점

1) 주요사유

○ 법 인

-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 · 과점주주 · 사업양수인 파악
- 법인의 소유로 등기된 도로 · 하천 제방 등은 자투리땅 등 환가가 어려운 재산 이 잔존
- 법인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이 있으나 불확실한 자동차(법인의 부도나 해산시 채권자들이 무단 인수해간 자동차등) 등 존재

○ 개 인

- 행방불명인 상태이거나 법인의 경우와 같은 재산물이 남아 있는 등의 사유로 지방세법 제30조의3에 의한 결손처분이 어려운 실정임

2. 유형별 결손처분요령

1) 부동산소유

- 법인의 소유로 등기된 도로·하천 제방 등은 자투리땅 등 환가가 어려운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호의 의거 체납처분을 중단하고 결손처분
- 결손처분이전에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을 재산별로 조서를 작성하여 과세권자의 체납처분중지 결정 확정
- 법인의 명의로 된 사실상 폐차·멸실된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는 고질체납차량정리요령에 따라 비과세 하고 차량의 인도·보관·환가가 불가능함을 명시한 후 결손처분

2) 채권 후순위 또는 잔여금액이 없을 경우

-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채권의 담보순위가 현저히 후순위로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담보된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와 선순위 채권금액을 충당하고도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결손처분 실시
- 기타 개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에 준하여 결손 처분
 - ※ 재산의 추산가액 환산은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입증된 가액과 선순위 채권자의 추산가액을 고려하여 결정

VIII. 결 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도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결국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흐름이 체납액·징수율의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세입관서에서는 경기의 흐름에 의존하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기존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정비하는 등의 인위적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좀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 납세고지서가 송달 불능한 경우 징수유예기간 6개월 한을 연장 조정하여 체납발생을 최소화시키고, 형사고발을 위한 내부 기준안을 마련하여 고발함으로써 상습 체납을 예방하며, 증가하는 체납차량 정리를 위하여 납세필증 부착부활과 지방세법 개정시 주민세 결손처분조항을 종전과 같이 부활시키는 방법 등을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오래 전부터 누적되어온 체납액에 대하여 획기적인 징수와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실행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정리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모두는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모두의 선결 과제중의 하나인 만큼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체납액 정리에 힘을 시점이 아닌가 한다. ☺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 手數料(수수료)

국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 타인을 위하여 행하는 공적 役務에 대하여 그 報償으로 徵收하는 料金を 말하는데 이에 는 국가가 징수하는 手數料로서 法院이 행하는 訴訟節次 또는 非訟事件 절차에 대한 司法上的 手數料, 行政機關이 징수하는 租稅등의 加算金, 각종의 허가 또는 免許의 手數料등과 같은 行政上的 手數料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長도 특정한 개인을 위하여 하는 事務에 대하여 각종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 편 집 실 -